



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84호 |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2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0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1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2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2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3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5

고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120호 제3종 시설물의 해제고시 75

공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40호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본부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76

회람								
----	--	--	--	--	--	--	--	--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2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가 추가되어
- 이에 세무1과에서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의 ‘선정 대리인’ 관련 조문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조례 안 제6조)
- 선정 대리인 관련 조문의 이관 및 신설
(조례 안 제40조~제42조, 시행규칙 안 제25조~제27조))
- 인용 조문의 호 번호 현행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감사실

(2) 연락처: 전화)032-880-5971, FAX) 032-880-4859

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

제출년월일: 2026년 월 일

제 출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5.1.1.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의 호 번호를 현행화하고 조문 표현상의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 하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조문 인용 시 괄호 안 조문 제목 삭제하여 인용 체계 정비(안 제2조제1항제5호)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호 번호 현행화(안 제6조)
- 조례 조문 표현 중 띄어쓰기 오류 정정(안 제7조)
- 징수유에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인용 하도록 정비(안 제33조, 안 제38조)
- 제10장 ‘선정 대리인’ 신설(안 제40조~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14.(금) ~ 9. 4.(금) (21일간)

2) 입법선행절차

-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다) 성별영향평가: 완료
-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2호(납세자)”를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이의신청등의대리인)”를 “「지방세기본법」 제93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조례”를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로 한다.

제38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10장(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선정 대리인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로서 그 청

구 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를 제4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
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 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
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
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
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생략)

제33조(업무의 범위) 구청장은 영 제5
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
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4. (생략)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
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

호에서 “조례-----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
----- 제2조제1항제3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업무의 범위) -----
----- 제6호-----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
5조의2-----

4. (현행과 같음)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
----- 제25조의2-----

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장 선정대리인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로서 그 청구 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만료 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

제40조 (생 략)	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4. 작성자: 감사실 감사실장 이선자

관계법령 검토와 발채사항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제1항 ☐ 「지방세기본법」 ○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6. 2. 5. 시행,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2026. 2. 5.>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2026. 2. 5.>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세기본법 (2026. 2. 5. 시행,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23., 2024. 12. 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6. 2. 5. 시행,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일부개정)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지방세법」 제6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
- 나.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③ 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 ④ 법 제9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 ⑤ 법 제9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30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가 추가되어
- 이에 세무1과에서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의 ‘선정 대리인’ 관련 조문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조례 안 제6조)

- 신정 대리인 관련 조문의 이관 및 신설
(조례 안 제40조~제42조, 시행규칙 안 제25조~제27조))
- 인용 조문의 호 번호 현행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감사실

(2) 연락처: 전화)032-880-5971, FAX) 032-880-4859

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6 -
------------	--------

제출년월일: 2026년 월 일

제 출 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 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의 조 번호를 현행화하고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되는 등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조 번호 현행화(안 제21조제6항)
- 징수유예 등의 통지일 변경(안 제24조제5항)
- 제6장 ‘선정 대리인’ 신설(안 제25조~제27조)
- 별지서식 신설(별지 제46호서식~제4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14.(금) ~ 9. 4.(금) (21일간)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평가: 완료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6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선정 대리인

제2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을 따른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을 따른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41조제6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48호서식을 따른다.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처분내용	연도	기분	세목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매출액)과 소유 재산(자산)가액이 각각 아래 기준금액 이하일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 재산가액 5억원
 - 법인: 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41조제2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미추홀구가 신청인의 위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신청(청구)인 제출서류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득금액(매출액)과 소유 재산(자산)가액의 기준금액 충족 여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관인생략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 ⑤ (생략) 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u>제19조</u> 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제18조</u> -----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징수유예 등) ① ~ ④ (생략)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u>7일</u>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24조(징수유예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10일</u> ----- ----- -----. ----- -----.
<신설>	<u>제6장 선정 대리인</u>
<신설>	<u>제2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을 따른다.</u>

<신 설>

제26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을 따른다.

<신 설>

제27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41조제6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48호서식을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4. 작성자: 감사실 감사실장 이선자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제1항 □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 별지 제26호서식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6. 2. 5. 시행,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2026. 2. 5.>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2026. 2. 5.>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세징수법**

(2026. 2. 5. 시행,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일부개정)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025.1.1.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538호, 2024.12.31., 일부개정)

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1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2호) 예우대상자 범위 확대

나. (안 제3조제1항제5호) 예우대상자에 대한 경비 감면 해당 조례 제명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4(송의동)

송의보건지소 3층, 복지정책과

(2) 연락처: 전화)032-880-4265 FAX) 032-880-4821

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2026 -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우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나. 예우대상자에 대한 경비 감면 해당 조례 제명 정비(안 제3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2026. 8. 14.(금) ~ 2026. 9. 4.(금)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 성별영향평가: 완료

라) 인권영향평가: 완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병역명문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예우대상자”란 <u>병역명문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u>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주소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u> ----- --. 3. (현행과 같음)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5. 「 <u>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u> 」 제8조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6. (생략)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u>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병역법」

○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생 략’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4. 작성자: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2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등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환경계획의 수립)
- 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환경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본관1청사 1층 환경보전과
(2) 연락처: (전화)032-880-4316 (FAX) 032-880-7445

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환경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환경계획의 수립)
- 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2026. 8월 중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평가: 완료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미추홀구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u>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u>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u> ----- ----- ----- ----- -----.
제9조(<u>환경보전계획의 수립</u>)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u>인천광역시미추홀구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	제9조(<u>환경계획의 수립</u>) ①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u>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u> ---. 다만, 환경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u>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u>환경보전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u>환경계획</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 환경계획-----

-----.

④ -----
----- 환경계획-----

-----.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

② ----- 환경계획-----

-----.

1.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군의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군·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환경

나. 대기·수질·토양 및 기후 등 생활·기후환경

2. 시·군·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의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기술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용 발생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복지환경국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2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대표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제2항 및 제8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 나.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기준 정비(안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환경보

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본관1청사 1층 환경보전과

(2) 연락처: 전화)032-880-4321 FAX) 032-880-7445

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상의 위원회 명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2항, 제8조 제목)

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다양한 사회계층 이해관계자 구성 등을 신설한 조문 정비(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2026. 8월 중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개선 의견	부서 검토 내용
○ 조례안 제9조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조례안 제9조제1항 - 현행 유지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제2편 세부 입안기준(위원회의 구성 규정)에는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 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음.
○ 조례안 제9조제3항 - “<u>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를 제4항을 신설하여 두 개의 조문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함.	○ 조례안 제12조제4항 - 현행 유지 -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제3항의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위촉 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 항으로 분리하기 보다는 위촉직 위원을 규정한 제3항 본문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적절하다고 판단됨

라)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법 제12조제2항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12조제2항을 따른다. <단서 삭제> <삭 제>
제8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 ----- ----- ----- -----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구의원,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의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기술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용 발생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복지환경국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3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2026. 7. 1.자부터 미추홀구 지명 사무가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에서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구성 중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청사 1층 토지정보과
- 팩스번호: 880-4866

라.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880-423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 2026. 7. 1.자부터 미추홀구 지명 사무가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에서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구성 중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2026. 8월 중

2) 입법선행절차

가)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예정

다) 성별영향평가: 실시예정

라) 인권영향평가: 실시예정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 ④ (생략)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문화예술과장</u> 으로 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지명업무담당과장</u>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본조신설 2023. 6. 9.]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20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고속종점보도육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76-10	미추홀구청 건설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1-1단계) 진행됨에 따라 철거 완료됨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함.	

- 고시기간 : 2026.08.10. ~ 2026.08.25.
- 고시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게시판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설과(032-880-4416)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34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8.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8. 31. (18일간)
3.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4.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게시
5.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시송달 대상자

처분 종류	성명	송달주소	과태료	반송사유	등기번호	위반내용
사전 통지	최*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번길 3*, 20*호 (구월동)	금5,088,000원	폐문부재	14417-0603 -47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7. 공시송달 내용

-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가산금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8.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불법 유동광고물 담당(032-880-4413)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